



제337회 임시회
2015. 1. 28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월 19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‘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의 구성·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)
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 →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
-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(안 제3조)
 - ‘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가 대행하던 ‘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의 기능을 ‘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가 대행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(‘14.5.28)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,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에 대행하던 ‘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에서 ‘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로 변경하며,
-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신설된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2의 통합공시에

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임.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사안이며,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관리·운영 원칙에도 부합 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단, ‘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기능으로 하는 바, 기능 측면에서 볼 때,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존 ‘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데, 이를 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에서 대행토록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.

※ ‘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 운영 관련 타 지역 현황

- ① ‘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에서 기능대행(2) : 부산, 대전
- ② 기능 통합 형식의 위원회 구성(5):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남

울산	지방재정심의위원회
세종	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
경기	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
강원	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
충남	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

- ③ 별도 ‘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 구성(6): 대구, 인천, 광주, 전북, 경북, 경남

- 또한,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2의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장관의 수정공시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 공지 대상이지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, 이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